

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

제정	2000. 11. 17	규칙 제 775호
개정	2003. 12. 23	규칙 제 828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	2004. 6. 25	규칙 제 834호(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)
	2007. 3. 28	규칙 제 900호
	2008. 6. 16	규칙 제 93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	2010. 12. 15	규칙 제 99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2. 2. 20	규칙 제1027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3. 8. 1	규칙 제106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4. 8. 14	규칙 제108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8. 7. 31	규칙 제1184호(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	2018. 9. 4	규칙 제119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9. 12. 20	규칙 제122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4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 3. 28, 2008. 6. 16>

제2조(위촉직위원)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07. 3. 28>

1.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,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
2.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
3.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
4. 기타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3조(간사) ①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된다. <개정 2003. 12. 23, 2004. 6. 25, 2019. 12. 20>

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4조(자체심사위원회)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법무과장이 되며,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3. 12. 23. 2004. 6. 25, 2010. 12. 15, 2013. 8. 1, 2014. 8. 14, 2018. 9. 4, 2019. 12. 20>

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심사
2.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,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2. 15>

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

제5조(수당) 제2조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3. 28, 2008. 6. 16, 2012. 2. 20, 2018. 7. 31>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12. 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4. 6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7. 3. 28 규칙 제90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규칙 제93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2. 15 규칙 제99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5항 중 “예산담당”을 “해당업무 팀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 <2012. 2. 20 규칙 제1027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「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한다.

② 부터 ⑤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8. 1 규칙 제106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안전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및 ⑤ 생략

부칙 <2014. 8. 14 규칙 제108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안전자치행정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⑩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7. 31 규칙 제1184호,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8. 9. 4 규칙 제119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, 제4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기획조정실장”으로 한다.

⑨ 부터 ⑰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12. 20 규칙 제122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예산법무과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기획예산과장”을 “예산법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④ 부터 ⑧ 까지 생략

[별지 제1호서식]

위 축 장

(주소)

(성명)

귀하를 광명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[위촉기간: 부터 까지]

년 월 일

광 명 시 장

[별지 제2호서식]

회 의 록

년도 제 회 광명시에산성과금심사위원회 · 자체심사위원회 회의			
회의 개최 일시	년 월 일()	장 소	
위원 참석 현황	재적위원 명, 참석위원 명, 불참위원 명		
주요 안건			
회 의 내 용			

[별지 제3호서식] <개정 2003. 12. 23>

지출절약(수입증대) 계획서

(년도)

[○○부서명]

제 목 (사업명) : _____

현황(추진실태)

목표책정

세부추진계획(개선방안)

기대효과